

제4차산업경제위원회
2012.12.13(목) 17:00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장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권기수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2년 12월 3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2월 5일

3. 제안 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나. 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1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